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23-108 |
|----------|--------|

제출년월일 : 2023.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치매안심센터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3.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추진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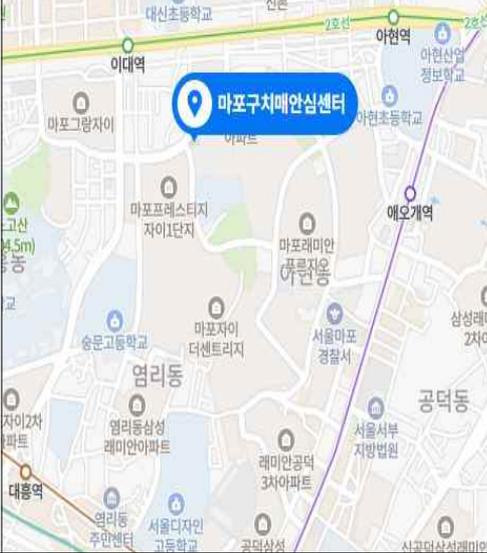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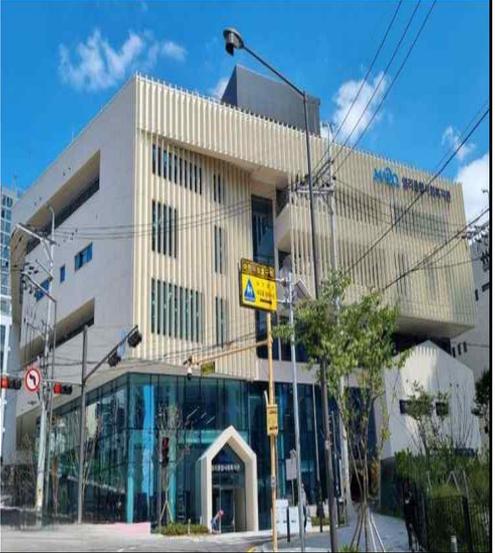
- 어르신 치매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

-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교육, 홍보, 상담 등)
- 치매 조기검진 사업(선별검진, 정밀검진, 원인확진검사)
- 대상자 등록·관리 사업(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공공후견인 지원 등)
- 치매 가족지원 사업(가족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등)
- 지역자원 강화 사업(협의체 운영,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주치의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구 분 | 내 용 |
|--------------------|--|
| 시 설 명 |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
| 시설현황 | 검진실, 프로그램실, 치매환자 쉼터, 가족카페, 사무실 등 |
| 규 모 | 1,236㎡(374평) |
| 위 치 | 마포구 대흥로 24길50, 3층(염리종합사회복지관) |
| 위 치 도 및 현장사진 |   |

마. 민간위탁기간: 3년 (2024.01.01. ~ 2026.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1,556,616천원

| 구 분 | 예산액(천원) | 산출내역 |
|-----------|-----------|-------------------------|
| 치매안심센터 운영 | 1,448,000 | - 센터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 |
| 치매치료관리비 | 103,960 | - 치매 치료비 지원 |
| 치매공공후견사업 | 4,656 | - 공공후견인 활동비 및 심판청구 비용 등 |
| 합 계 | 1,556,616 | |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서 참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나. 기타사항

○ 추진일정안

- 2023년 10월: 위탁 업체 모집 공고(※ 공개모집)
- 2023년 11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년 12월: 선정결과 공고 및 협약 체결
- 2024년 1월: 위탁사무 시작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서

| | | | | |
|--|--|---------------------------|-------------------|------|
| 위탁사무명 |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 | | |
| 국 명 (주관부서) |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 | 건강동행과장 | (간호5급, 우미영, 9060) | |
| | | 방문보건팀장 | (간호6급, 이미선, 9061) | |
| | | 담당자 | (간호7급, 은방울, 9062) | |
| 사무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대상: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 위탁 기간: 2024.1.1. ~ 2026.12.31.(3년) ○ 사업 내용: 치매관리사업 운영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검진 및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등 사업 전반 | | | |
| 민간위탁 추진목적 | ○ 어르신 치매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과 숙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증대 | | | |
| 위탁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 | | |
| 위탁내용 | ○ 추진경위 | | | |
| | -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 만료일(2023.12.31.) 도래에 따른 재위탁 추진 | | | |
| | ○ 추진현황 | | | |
| | 구분 | 위탁기간 | 수탁기관 | 비고 |
| | 최초위탁 | 2007.07.20. ~ 2008.12.31. | 여의도성모병원 | 공개모집 |
| | 재위탁 | 2009.01.01. ~ 2011.12.31. | 여의도성모병원 | 재계약 |
| | 재위탁 | 2012.01.01. ~ 2014.12.31. | 서울성모병원 | 공개모집 |
| | 재위탁 | 2015.01.01. ~ 2017.12.31. | 서울성모병원 | 재계약 |
| 재위탁 | 2018.01.01. ~ 2020.12.31. | 서울성모병원 | 공개모집 | |
| 재위탁 | 2021.01.01. ~ 2023.12.31. | 서울성모병원 | 재계약 | |
| ○ 위탁기간: 3년 (2024.1.1. ~ 2026.12.31.) | | | | |
| ○ 위탁내용 | | | | |
| -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교육, 홍보, 상담 등) | | | | |
| - 치매 조기검진 사업(선별검진, 정밀검진, 원인확진검사) | | | | |
| - 대상자 등록·관리 사업(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공공후견인 지원 등) | | | | |
| - 치매 가족지원 사업(가족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등) | | | | |
| - 지역자원 강화 사업(협업체 운영,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주치의 등) | | | | |

| <p>적 정 성 검 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효율적인 어르신 치매관리를 위해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p>(기존) 수탁기관 및 선 정 방 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수탁기간: 2021.01.01. ~ 2023.12.31.(3년) ○ 선정방법: 재계약 | | | | | | | | | | | | |
| <p>수 탁 기 관 선 정 방 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모집 | | | | | | | | | | | | |
| <p>민간위탁금</p>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도별</th> <th style="width: 35%;">민간위탁금(천원)</th> <th style="width: 50%;">산출내역</th> </tr> </thead> <tbody> <tr> <td>2021년</td> <td style="text-align: right;">1,388,760</td> <td>-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인건비, 사업비)</td> </tr> <tr> <td>2022년</td> <td style="text-align: right;">1,490,016</td> <td>- 치매치료관리비 지원</td> </tr> <tr> <td>2023년</td> <td style="text-align: right;">1,556,616</td> <td>-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 지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사유: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위탁금 증가 - 매칭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국비 50%, 시비 25%, 구비25%) ② 치매치료관리비 (시비 65%, 구비 35%) ③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국비 50%, 시비 25%, 구비25%) | 연도별 | 민간위탁금(천원) | 산출내역 | 2021년 | 1,388,760 |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 2022년 | 1,490,016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2023년 | 1,556,616 |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 지원 |
| 연도별 | 민간위탁금(천원) | 산출내역 | | | | | | | | | | | |
| 2021년 | 1,388,760 |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 | | | | | | | | | | |
| 2022년 | 1,490,016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 | | | | | | | | |
| 2023년 | 1,556,616 |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 지원 | | | | | | | | | | | |
| <p>사용료 (자립형 위탁 시 가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 | | | | | | | | | | | |
| <p>기 대 효 과 및 향 후 계 획</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체계적인 치매관리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이 운영함에 따라 사업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0월: 위탁 업체 모집 공고 및 접수(※ 공개모집) - 2023년 11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년 12월: 선정결과 공고 및 협약 체결 - 2024년 1월: 위탁사무 시작 | | | | | | | | | | | | |